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6. 23.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 5. 19.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2023. 5. 25.

다. 상정일자: 제26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2023. 6. 13.)

상정, 심사,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가족행복지원과장

가. 제안이유

- 마포여성동행센터의 시설 사용허가, 사용료 징수, 사용료 등의
감면·할인 반환규정 등 필요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도모 하고자함

나. 주요내용

- 센터 내 시설 사용허가, 사용료 징수, 사용료 등의 감면·할인 및 반환규정 신설(안 제51조 ~ 제55조)
- 내용에 맞게 조항 재배치 (안 제56조)
- 불필요한 조항 삭제: 조례 제52조(시행규칙)
- 조문 신설에 따른 별지서식 규정
 - 〈별표 1〉 사용료 징수 범위 (제53조 관련)
 - 〈별표 2〉 사용료 등 감면 (제54조 관련)
 - 〈별표 3〉 수강료 반환기준 (제55조제2항 관련)

3. 검토보고 (장홍용 전문위원)

- 본 개정조례안은 마포구청장이 발의하여 복지도시위원회로 회부된 개정조례안으로 마포여성동행센터의 시설 사용허가, 사용료 징수, 사용료 등의 감면·할인 반환규정 등 필요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 하고자 하는 것으로,
-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51조에서는 마포여성동행센터 내 시설 사용허가를 신설하였고
 - 안 제52조에서는 사용허가의 취소 및 중지를 신설하였으며,
 - 안 제53조부터 안 제55조까지는 사용료 등의 감면·할인·반환 등을,
 - 그리고 안 제53조부터 안 제55조 관련 사용료 징수범위, 사용료 등 감면, 수강료 반환기준에 따른 별지서식을 신설한 것임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성별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바가 없으며,

사용료 등 결정은 2023년 제1차 마포구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마포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3회 연속 여성친화도시에 선정된 바, 이러한 지역특성을 살려 단순한 프로그램 운영이 아닌 즉, 각종 문화센터와는 차별화 될 수 있는 사회적약자인 노인,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 등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양성평등 인식확산 위주의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 자료

1. 관련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기관등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성별영향평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7.>

1. "성별영향평가"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중앙행정기관"이란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3.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말한다.

2. 제1차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공문



새로운 마포 더 좋은 마포

마포구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3년 제1차 마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 경제진흥과-10779(2023. 3. 6.)호와 관련입니다.
- 2023년 제1차 마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 합니다.

- 가. 심의일자: 2023. 3. 3.(금)
나. 심의방법: 대면 심의
다. 심의결과

연 번	부 서 명	안 건 명	심의 결과
1	주차관리과	마포구 거주자우선주차 부정주차요금 상향 조정(안)	원안 의결
2	가족행복지원과	마포동행센터 사용료 등 결정(안)	원안 의결

- 붙임 1. 2023년 제1차 마포구 물가대책위원회 결과 보고 1부.
2. 심의의결서 1부. 끝.

마포구청장

수신자 주차관리과장, 가족행복지원과장

★주무관 생활경제팀장 경제진흥과장

협조자

시행 경제진흥과-10945 (2023.03.06.) 접수 가족행복지원과-6431 (2023.03.07.)
우 03937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212(성산동) /http://www.mapo.go.kr
전화 02)3153-8562 /전송 02)3153-8589 / shs80@mapo.go.kr / 비공개(6)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수정안 불임)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23-92 관련
----------	----------

제안년월일 : 2023. 6. 13.

제안자 : 복지도시위원장

1. 수정이유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따른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를 추가하여 사용료 감면·할인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가. 제54조제4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따른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나. 제55조제3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2>

사용료 등 감면 (제54조 관련)

대	상	감면 비율	비고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면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50%	

대 상	감면비율	비고
<p>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따른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 - 구에서 발행한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사람 중 4자녀이상 가정 세대주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에서 발행한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사람 중 3자녀 가정 세대주 및 세대원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에서 발행한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사람 중 2자녀 가정 세대주 및 세대원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4조제4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따른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제55조제3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2>

사용료 등 감면 (제54조 관련)

대 상	감면비율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따른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 	50%	

대 상	감면비율	비고
- 구에서 발행한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사람 중 4자녀이상 가정 세대주 및 세대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20%	
- 구에서 발행한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사람 중 3자녀 가정 세대주 및 세대원	30%	
- 구에서 발행한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사람 중 2자녀 가정 세대주 및 세대원	10%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u><신 설></u></p>	<p><u>제51조(시설 사용허가) ①</u> <u>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u> <u>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u> <u>를 받아야 한다.</u></p> <p><u>② 구청장은 사용허가</u> <u>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u> <u>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u> <u>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u> <u>하지 아니할 수 있다.</u></p> <p><u>1. 영리 또는 정치·종</u> <u>교적인 목적을 위하여</u> <u>사용을 신청하는 경우</u></p> <p><u>2. 사용자의 안전 및 시</u> <u>설물 유지를 위해 사</u> <u>용을 제한할 필요가</u> <u>있다고 인정하는 경우</u></p> <p><u>3. 그 밖에 공공질서와</u> <u>선량한 미풍양속을 해</u> <u>할 우려가 있다고 인</u> <u>정되는 경우</u></p>	<p><u>제51조(개정안과 같음)</u></p>
<p><u><신 설></u></p>	<p><u>제52조(사용허가의 취소</u> <u>및 중지) 구청장은 제 5</u> <u>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u>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u></p>	<p><u>제52조(개정안과 같음)</u></p>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
· 중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이나 이 조
례에서 정한 사항 또
는 관리운영규정을 위
반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
법으로 허가를 신청하
거나 허가를 받은 경
우

3. 허가 이외의 목적으
로 사용하거나 허가조
건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

<신 설>

제53조(사용료) ① 제51조
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
용료의 종류 및 징수기
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사용자는 사용허가
후 지체 없이 사용료 전
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 설>

제54조(사용료 등의 감면
· 할인) 다음 각 호의

제53조(개정안과 같음)

제54조(사용료 등의 감면
· 할인)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7.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
8.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

-----.

1. ~ 3. (개정안과 같음)
4.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따른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5. ~ 11. (개정안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와 같음)

족

9.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조례」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10. 그 밖에 구청장이 공
익상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

<신 설>

제55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55조(개정안과 같음)

① 납부한 사용료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예정일부
터 사용취소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사용료를 납부한 자
가 사용예정일 7일 전
까지 사용취소한 경우
대관료 전액을 반환하
고, 사용예정일 전날
까지 사용취소한 경우
에는 위약금 10% 공제
후 잔액을 반환한다.

2. 사용료를 납부한 자
가 센터의 특별한 사

정 또는 천재지변 등
의 불가항력으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에는 전액을 반환한다.

② 수강료의 반환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이 폐쇄되거나
운영 정지된 경우

2. 운영자가 교육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3. 수강생이 본인의 의
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반환사
유가 발생한 경우 별표3
의 반환기준에 따라 수
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반환할 수 있다.

제51조 (생 략)

제5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
다.

<신 설>

제56조 (현행 제51조와 같
음)

<삭 제>

<별표1>

사용료 징수 범위(제53조

제56조(개정안과 같음)

<삭 제>(개정안과 같음)

<별표1> (개정안과 같음)

별표1, 별표2 및 별

표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

한다.

관련)

구 분	단 위	기준금액	부 과 기 준
세미 나실	1시간	25,000 원	○ 1시간 이 내는 1시간 으로 계산
일반 강의실 I	1시간	20,000 원	○ 1시간 이 내 초과 시 는 다음시간 이용료까지 가산함
일반 강의실 II	1시간	15,000 원	○ 토, 일, 공휴일은 기 준 금 액 의 1 0 0 분 의 20을 가산 함
일반 강의실 III	1시간	10,000 원	

<별표2> 사용료 등 감면
(제54조 관련)

대 상	감면 비율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 - 구에서 발행한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사람 중 4자녀이상 가정 세대주 및 세대원 	50 %	

<별표2> 사용료 등 감면
(제54조 관련)

대 상	감면 비율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따른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 	50 %	

대 상	감면 비율	비 고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20%	
- 구에서 발행한 다등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사람 중 3자녀 가정 세대주 및 세대원	30%	
- 구에서 발행한 다등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사람 중 2자녀 가정 세대주 및 세대원	10%	

<별표3> 수강료 반환기준
(제55조제2항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제 5 5 조 제 2 항 제 1 호 및 제 2 호 에 따른 반 환 사 유 의 경 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제 5 5 조 제 2 항 제 3 호 에 따 른 반 환 사 유 의 경 우	수업시작 전	수강료 전액
	총 수업시간의 1/30이 지나가기 전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20이 지나가기 전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20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않음
나 . 수 강	수업시작 전	수강료 전액

대 상	감면 비율	비 고
- 구에서 발행한 다등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사람 중 4자녀이상 가정 세대주 및 세대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20%	
- 구에서 발행한 다등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사람 중 3자녀 가정 세대주 및 세대원	30%	
- 구에서 발행한 다등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사람 중 2자녀 가정 세대주 및 세대원	10%	

<별표3> (개정안과 같음)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p style="text-align: center;">료 징 수 기 간 이 1 개 월 초 과 하 는 경 우</p>	<p style="text-align: center;">수 업 시 작 후</p>	<p>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p>
<p style="text-align: center;">비 고</p>	<p>총 수업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신청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p>	